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및 시행〉

■ 송옥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451호)

■ 박 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851호)

2024. 8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2
III . 검토의견	4
1. 개정안 취지	4
2. 검토 의견	5

I . 제안경 위

1.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2201451)

가. 발 의 자 : 송옥주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8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9.

2. 박 정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2201851)

가. 발 의 자 : 박 정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17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18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

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.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,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.6배임.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,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,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2. 박 정의원 대표발의안

2018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·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각 군에서도 폭염·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,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.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,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.

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.

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 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 취지

□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(이하 “송옥주의원안”)과 박 정의원 대표 발의안(이하 “박 정의원안”)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.

□ 2018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·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개정안들은 폭염·한파 등 「기상법」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다만, 차이점을 보면 폭염·한파 등으로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

송옥주의원안은 ‘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’에서, ‘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’이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,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‘대통령령’으로 정하고자 하며,

박 정의원안은 ‘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

휴식' 하도록 하며, '국방부장관'이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규정하며,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'국방부장관 훈령'으로 정하고자 함.

2. 검토 의견

- 개정안들은 폭염·한파 등 「기상법」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 행	송옥주 의원안	박 정 의원안
<신 설>	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	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현행	송옥주 의원안	박정 의원안
	<u>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<u>② 국방부장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다.</u>

□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의 3.6배이며, 최근 3년간 온열 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연평균 약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최근 3년간 온열 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]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군 병원 내원 건수	135건	188건	213건

자료 : 국군의무사령부

이처럼 기후위기로 폭염·한파 관련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재난으로써 폭염·한파 등에 대한 대응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켰으며, 같은 해 국방부 또한 「국방 재난관리 훈령」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¹⁾시켜 제도를 정비하고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각 군 및 기관에 하달²⁾하는 등 군내 대비 지침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임.

□ 개정안들은 폭염·한파 등 「기상법」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현재 훈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, 폭염·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지휘관에 의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.

1) 「국방 재난관리 훈령」 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, 민간 재난대응·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「해외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」의 해외재난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2) [참고자료] 온열손상 관리지침 참고

□ 한편,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□ 첫째, 폭염·한파 등으로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송옥주의원안은 ‘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’에서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,
박 정의원안은 ‘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’ 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부대활동은 작전임무수행 뿐만 아니라 부대관리, 교육훈련, 대민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행위가 외부와 내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작전임무수행을 기준으로 나누기 보다는 ‘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’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.

□ 둘째, 폭염·한파 등으로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체와 관련하여,
송옥주의원안은 ‘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’이, 박 정의원안은 ‘국방부장관’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법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의무 및 병영생활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시 주체를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다는

3)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,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점을 고려할 때,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 또한 국방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.

- **마지막으로**, 개정안들은 폭염·한파 등의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송옥주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, 박 정의원안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폭염·한파 등 기상특보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한 조치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을 하되,

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훈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재 온열손상 관리지침을 시달하는 등 군내 대비 지침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나,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인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.

제7조(군인복무기본정책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(이하 “기본정책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)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1조(집단행위의 금지)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.

제37조(다문화 존중)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8조(기본권교육 등) ① 국방부장관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5조(신고자 보호)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문 의 처
02)6788-5310